

기 관 명

우

주 소

/전화()○○○○ /전송()○○○○

○○과

과장 ○○○

/서기관, 사무관 또는 주사 ○○○

/담당 ○○○

문서번호

시행일

수 신

발 신

직인

제 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일련 번호	① 관 리 번호	납세의무자			⑥ 귀속 연도	⑦ 세무서 (담당자)	환급결정		⑩ 구분	⑳ 발행연월	㉑ 발행번호	㉒ 합 계 금	㉓ 과세 표준	㉔ 산출 세액	㉕ 세액 감면 (명세)	㉖ 세액 공제 (명세)	㉗ 결정 세액	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						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				환급 신고 계좌			
		⑤ 현주소 (신고당시 주소)	③ 주민 등록 번호	④ 연락처			㉘ 결정일	㉙ 사유										기납부세액						환급세액			㉚ 세액	㉛ 기납부 세액	㉜ 환급할 세액	㉝ 은행 코드	㉞ 계좌 번호
																		㉑ 중간 예납	㉒ 원천 징수	㉓ 수시 부과 등	㉔ 본세	㉕ 무신고 등 가산세 (명세)	㉖ 납부지 연가산 세								
총 계	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
1					()			경정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차이																									
2					()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경정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차이																									
3					()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경정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차이																									

작성 방법

- ☐ ① 관리번호: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인적사항(납세의무자)란
- ③ 주민등록번호: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④ 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⑤ 현주소(신고 당시 주소):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☐ ⑥ 귀속연도: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.
- ☐ ⑦ 세무서(담당자):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.
- ☐ ⑧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, ⑨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.
- ☐ ⑩ 구분: "당초"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, "경정"은 결정,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☐ ㉓ 발행연월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.
- ㉔ 발행번호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
- ㉕ 세액감면 · ㉖ 세액공제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, 감면 · 공제액 및 감면 ·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㉗ 가산세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㉘ 중간예납: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.
- ㉙ 원천징수: 원천징수(납세조합 징수 포함)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.
- ㉚ 수시부과 등: 수시부과세액,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,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- ㉛ 본세: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.
- ㉜ 무신고 등 가산세: 가산세 중 ㉞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, 가산세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☐ 환급금 신고계좌란
- ㉟ 은행코드: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.
- ㊱ 계좌번호: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.